

투 자 권 유 준 칙

으뜸자산운용(주)

투 자 권 유 준 칙

제정 2021. 06.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에 따라 으뜸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 및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이하 “투자권유업무”라 한다)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투자권유”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

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2장 투자자 구분

제4조(방문 목적 확인)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제3장 투자권유

제6조(투자권유 절차)

- ① 임직원등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춰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 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7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금융투자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가)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3) 신탁계약

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나) 법 제10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5. 투자자(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 로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와 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관계법령과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8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①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②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③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④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9조(설명의무)

- ①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집합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안된다.
- ③ 회사가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집합투자증권(또는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계약.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투자자가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이 원본을 초과할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

-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가격변동위험, 투자기업의 부도위험, 금리변동위험 등) 외에 추가적으로 환율변동위험이 따른다는 사실과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헤지비용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3.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증시상황 등의 특징
- ② 회사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증시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

① 회사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특성 외에 추가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인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의 주요 특성(구체적인 구조, 투자대상 등)
2.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추가적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인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투자위험
3. 투자대상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

② 회사는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임직원이 동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도록 교육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영업 행위 준칙

제11조(잘못된 정보 제공 금지)

① 회사는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투자자에게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2.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3. 투자자에게 근거 없는 허위의 사실, 그 밖에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상 특정 국가, 지역 또는 특정 종류의 자산 등에 대한 투자비율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 설명 및 광고자료 등에 특정 국가, 지역 또는 특정 종류의 자산 등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투자자정보의 이용금지)

① 회사(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취득한 투자자의 정보를 자신의 고유업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회사는 고유업무(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이외의 업무를 말한다)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업무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5장 보칙

제13조(투자광고)

- ① 회사가 영위업무 또는 집합투자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상품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투자대상 국가 및 지역의 경제, 증시전망을 객관적인 발표, 조사 자료 등에 근거하지 않고 예측하여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투자권유행위등의 점검)

- ① 협회가 회사(투자권유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협회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자료 제출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회사 준법감시인은 투자권유의 투자권유준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합의관할)

회사와 회사의 투자권유 임직원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기타)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법시행령, 규정 및 협회관련규정 등 관련법령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준칙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202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